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09 -45호

「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09년 12월 2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있어 단서조항인 “다만,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”를 삭제하며,
- 「공직선거법」 제86조제3항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한기간 중에도 조례를 제·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·시달한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시행일을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함.(부칙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1일까지(10일간)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참조: 문교사회전문위원, 전화 032-440-6223, 팩스 032-440-876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: ○ 성 명: ○ 연락처:			

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인천광역시조례 제4327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중 “2010년 7월 1일부터”를 “공포한 날부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참전명예수당)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전명예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	제5조(참전명예수당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 단서 삭제 >
② ~ ③ (생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인천광역시조례 제4327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일부개정조례) 부 칙	인천광역시조례 제4327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일부개정조례) 부 칙
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	----- 공포한 날부터 ----- -----.